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金成泰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66 |
|----------|------|

발의연월일 : 2016. 8. 31.

발의자 : 金成泰 · 박순자 · 이종명
임이자 · 유민봉 · 윤종필
조훈현 · 김상훈 · 강효상
정운천 · 정태옥 · 원유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에서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업의 특성상 정보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을 제외하고 있어,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정보화계획 수립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정보화계획 수립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을 “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 |
|--------------|---|
| | <p><u>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u> <u>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u>이에 따라야 한다.</u></p> |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 ③ ~ ⑤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